(폐지) NAK/G 2:2014(v2.1)

National Archives Standard

기록생산 의무이행 지침 :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v2.1)

Guide to Creating and Managing Obligatory records
: Investigation, Research and Review reports
and Meeting minutes(v2.1)

Version 2.1



○ 폐 지 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

○ 제 정 일: 2007년 12월 28일(행정자치부 고시 제2007-54호)

○ 1차 개정일 : 2010년 10월 4일(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66호)

○ 2차 개정일 : 2014년 7월 9일(국가기록원 고시 제2014-5호)

○ 폐 지 일 : 2017년 12월 29일(국가기록원 고시 제2017-8호)

○ 심 의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표준전문위원회

○ 검 토:

• 국가기록원 수집기획과

•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 관 리:

•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 (1) 이 표준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은 아래 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 수집기획과(042-481-1757) 기록정책부 정책기획과(042-481-6331)

(2) 이 표준은 「저작권법」제24조의 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저작권자인 국가기록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는 금지합니다.

Copyright© National Archives of Korea(2017). All Rights Reserved.



목 차

머리발	.II
1 적용범위	1
2 적용근거	1
2.1 법적 근거	1
2.2 인용표준	1
2.3 다른 표준과의 연계	1
3 용어정의	2
4 일반사항	4
5 조사・연구・검토서	
5.1 작성대상	
배당 3.2구성요소공공기록를 관리에 관한 법률 세계	8조에
5.3 등록 및 생산현황 통보 ···································	9
5.3 등록 및 생산현황 통보 표준임 5.3.1 등록 방법	9
5.3.2 제목 부여1	0
5.3.3 보존기간 책정 기준1	0
5.3.4 생산현황 통보1	0
5.4 관리 및 이관 ·······1	11
6 회의록 ······· 1	11
6.1 작성대상1	11
6.2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의무 대상 지정 절차 및 관리1	2
6.3 회의록 구성요소1	3
6.4 등록 및 생산현황 통보1	4
6.4.1 등록 방법1	4
6.4.2 제목 부여1	4
6.4.3 보존기간 책정 기준1	4

	6.4.4 생산현황 통보15	i
	6.5 관리 및 이관15	
	기록관에서의 생산의무 부과 기록물 관리 16 7.1 생산의무 부과 기록물 지정 16 7.1.1 대상 지정 계획 수립 16 7.1.2 지침서 작성 및 배포 16 7.2 생산의무 부과 기록물 관리 17	; ;
부	부속서 A(참고) 조사ㆍ연구ㆍ검토서 구성요소(민간기관용) ·························· 18	}
부	부속서 B(참고) 조사ㆍ연구ㆍ검토서 요약지 예시 ···································)
부	부속서 C(참고) 조사ㆍ연구ㆍ검토서 생산대상 업무 조사 양식(안) ············· 20)
부	부속서 D(참고) 회의록 작성 예시 ······21	
해당부	부속서 E(참고) 위원회 관리카드 예시(안)22	조에
부	부속서 F(참고) 회의록 생산대상 업무 조사 양식(안) ····································	}
부	부속서 G(참고) 생산의무 대상 기록 생산 및 관리 절차도 ·························24	ļ
부	부속서 H(규정) 생산현황통보 서식 ·······26	}
부	부속서 I(참고) 법령조견표 ·······28	}
부	부속서 J(참고) 체크리스트 ·······29)
부	부속서 K(규정) 관리대상 회의 예시 목록 ·······30)

머리말

이 표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생산 의무를 부여한 조사·연구·검토서 및 회의록의 생산과 관리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이 표준은 2010년 전부 개정된 이후 용어 표준화 및 회의록 생산현황 통보 서식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부속서의 지정 회의 목록, 회의 대상 예시 목 록을 현행화하여 2014년 2차로 개정되었다.

이 표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4절에서 기록생산 의무가 부여된 기록 물의 유형과 그 기록물 관리를 위한 공공기관의 의무를 제시하고, 제5절에서 는 조사·연구·검토서의 예시와 작성대상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였다. 또한 조사·연구·검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요소와 생산·등록 및 관리에 대 한 업무절차를 설명하였다. 제6절에서는 회의록이 작성되어야 할 회의체를 설명하고 주요 예시를 부속서를 통해서 상세히 제시하였으며, 회의록을 생산 하고 관리하기 위한 업무절차를 서술하였다. 제7절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기관에서 생산의무가 부과된 기록물을 누락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 폐지된 표준임

이 표준은 생산의무가 부과된 기록물의 범위와 그 관리 절차를 명확하게 제 시함으로써 중요 기록물을 누락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처리과의 업무 담당자들은 이 표준에서 제시 하는 상세한 예시로 생산의무가 부과된 기록물의 범위와 업무 처리절차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표준은 기록관리 표준전문위원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으며 국가기록원이 유지·관리한다. 이 표준은 관련 법령의 개정, 관계 기관 및 이해 당사자의 요청 등 개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및 심의 절차를 거쳐 개정한다.

기록생산 의무이행 지침: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에 생산의무가 부여된 조사 · 연구 · 검토서 및 회의록 생산과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한다.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 기록물관리책임자, 기록관리자는 조사·연구·검토 서 및 회의록 생산시 이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적용근거

해당 2대 법적 근거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 바라 폐지된 표준임이 표준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기록물 생산의 원칙)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조사·연구서 또는 검토 서의 작성)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2.2 인용표준

해당 사항 없음

2.3 다른 표준과의 연계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요하거나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기록관리 표준

은 다음과 같다.

- · NAK/S 3:2013(2.1)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 · NAK/G 1-1:2011(v2.1)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제1부: 간행물
- · NAK/G 1-2:2009(v2.0)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제2부: 시청각기록물

3 용어정의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 간행물(Publication)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간·배포하는 저작물. 수록매체에 제한이 없으며 발간 형태에 따라 단행본과 연속간행물로 구분한다.

보기 수록매체는 종이, CD, DVD, 웹 등

3.2 기록관(Records center)
공공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기록물관리기관. 기록물을

생산부서로부터 인수하고 일정기간 보존하며, 나아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비고 주요 기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참조

3.3 기록관리자(Records manager)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비고 일반적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말한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 치되지 않은 공공기관은 명문화된 내부규정으로 기록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4 기록물관리책임자

해당 처리과 기록물의 생산, 보관, 이관 등 기록관리 전 과정을 주관하는 담 당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3.5 기록물철(Files)

기록물 분류체계 내에서 최소의 단위사안별로 분류된 기록물의 집합

비고 단위과제 또는 단위업무의 범위 안에서 업무과정을 반영하여 관련 기록물을 편철한 상태의 기록물 단위이다.

3.6 단위과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최하 단위로 행정업무 수행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업무 간 유사성 및 독자성을 고려하여, 업무담당자가 소기능을 세분화한 업무 영역단위

3.7 단위업무

기록물분류기준표 상의 분류단위. 기록물의 기능분류 기준으로 1인 또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팀에 분장되는 수준의 업무 또는 사업으로서, 직제개정 등으로 업무변경시에도 2개 이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세분화된 업무 또는 사업단위. 인·허가처리, 징계처리 등과 같이 동일한 업무가계속 반복·처리되는 경우의 동종업무. 카드·대장·일지·장부 등 비치기록물의 종류별 단위에 해당하는 업무. 도면·사진 등의 대상이 되는 행사·시설·주제·사업단위의 업무

3.8 생산현황 통보

기록물의 정리결과를 시기별로 종합하여 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하는 것.

3.9 시청각기록물(Audiovisual records)

때체의 유형과 상관없이 영상이나 음성으로 저장·재생되는 기록물. 사진, 필름류, 녹음·동영상류로 구분된다.

3.10 이관(Transfer)

기록물의 물리적인 보존 장소 및 관리 권한을 기록관으로 이전하는 행위.

3.11 전자기록생산시스템(Digital records create systems)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서 및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제7호]

비고 "전자문서시스템"이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업무관리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행정정보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3.12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공공기록물 관리를 총괄·조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 할을 수행하는 기관. 국가기록원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다.

3.13 특수기록관(Special records center)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소관 기록물을 장기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록관

비고 주요 기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를 참조

4 일반사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업무의 입안 단계부터 집행 종료까지 기록으로 남겨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정책 결정, 대규모 사업 등과 관련된 '조사·연구·검토서'와 '회의록', '시청각기록물'은 생산의무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비고 시청각기록물은 별도의 표준 "NAK/G 1-2:2009(v2.0)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제2부: 시청각기록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표준의 범위에 서는 제외하다.

공공기관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과 조사·연구·검토서 등 생산 의무가 부과 된 기록물의 생산은 물론,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5 조사·연구·검토서

5.1 작성대상

공공기관은 아래와 같이 법령 제·개정, 주요 정책의 결정, 대규모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사전에 조사·연구·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연구·검토서는 업무를 계획하거나 주관하는 처리과의 해당 업무담당 자가 작성하도록 한다. 조사·연구·검토서의 작성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의뢰자가 공공기관이고 생산의무가 부과된 기록물이라면 조사·연구·검토서에 해당한다.

따라 폐지된 표준임

-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관련 사항
- 법령의 제·개정 관련 사항은 제·개정 방향 결정, 제·개정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검토서를 생산하여야 한다.
- 보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을 위한 연구(공정거래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률안 하위법령 제정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통합 방안 연구(법제처), 개인정보보호법 정비방안연구(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의 효과분석(감사원),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고용효과 분석(코트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규제영향 분석(환경부), 가족진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불법무역거래사범 단속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관세청), SI분야에서의 소프트웨어 거래 실태및 경쟁제한 관행 조사(공정거래위원회)

- (2)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이에 상당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도 제·개정 방향 결정, 제·개정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검토서를 생산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이나 조례 제·개정에 상당하는 주요 정책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책 결정 및 변경의 목적, 타당성,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조사·연구·검토서를 생산하여야 한다.
- 보기 서울시 아동·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서울특별시), 예천군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예천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점검과 관리방안(충청북도), 특위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이주민의 지역사회정착과 사회통합 정책 연구(안전행정부), 여성장애인지원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보건복지부), 관광산업 인적자원 육성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기초연구 진흥을위한 투자 및 정책방향 연구(국가과학기술위원회)
- (3)「행정절차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에당 묘존은 다금공기록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 · 행정예고는 주요 정책과 제도수립에 선행하여 이를 예고함으로써 국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행정예고의 대상이 되는 사안은다음과 같다.
 -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 ②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 ③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 ④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 (4)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주요 조약ㆍ협약ㆍ협정ㆍ의정서 등
 - ·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주요 조약·협약·의정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는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비고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는 외국의 자치단체 및 민간조직 등도 포함

된다.

- 보기 미국 메릴랜드(Maryland)주와의 자매결연 타당성 조사보고(경상남도) FTA체결에 따른 국토해양 분야 정책방향 연구(국토해양부) UN CITRAL 아태지역센터 행정·재정 약정(인천광역시)
 - (5) 「국가재정법」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공사
 - · 「국가재정법」에서는 대규모 사업에 앞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규모개발사업도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 해 정부예산 및 회계의 투명성을 확인하는 주요 기록으로서 조사·연 구·검토서가 작성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 비고 1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 ·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인 신규사업
 - ·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 ·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 표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 비고 2 대규모 개발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가리키며, 건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 보기 국가산업단지 연결철도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대구광역시), 인천내항 항 만재개발사업 타당성 및 기타용역 보고서(국토해양부), 장고항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보고서(농림수산식품부), 항공안전 종합통제센터 구축 기 본설계(국토교통부)
 - (6) 그 밖에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비고 1 각급기관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이 표준에서 열거한 사례 이 외에도 기관 운영에 필요하거나, 행정적 참조 또는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조사·연구·검토서 생산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비고 2 공공기관이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위과제별로 위의 (1)~(6)의 해당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입안, 타당성 조사·연구, 의견 수렴 결과 보고 등 각 절차별로 기록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다른 형태의 조사·연구·검토서를 생산할 필요는 없다.

5.2 구성요소

해당

공공기관이 조사·연구·검토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다.

표-1 조사 · 연구 · 검토서 구성요소

구성요소	구성요소 설명
조사·연구·검토 배경	조사·연구·검토가 필요한 배경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서술한다.
제안자 등 관련자의 소속· 직급·성명	최초 제안자 및 해당과제를 수행하는 관련자의 소속, 직급 및 성명 등을 표시한다.
기관장·관계기관의 지시· 지침 또는 의견	조사·연구·검토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지시 사항 및 지침,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관련현황과 검토내용	조사사항과 관련한 현황, 통계 등이 있는 경우 포함시킨다.
각종 대안과 조치 의견	조사·연구·검토서의 작성으로 도출된 대안 및 조치에 필요한 의견이 포함되도록 한다.
예상효과 혹은 결과 분석	조사·연구·검토서의 업무 반영 이후 예상 되는 효과 및 결과를 반영한다.

- 비고 1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 등 민간기관이 조사·연구·검토서를 작성할 경우의 구성요소는 부속서 A를 참조하도록 한다.
- 비고 2 공공기관은 조사·연구·검토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요약 지를 첨부하여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요약지의 양식은 부속서

진 에

B를 참조한다.

5.3 등록 및 생산현황 통보

5.3.1 등록 방법

공공기관의 조사·연구·검토서는 업무로부터 독립되어 별도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책결정 등의 필요성에 따라 생산되기 때문에 등록 및 관리 방식은 일반 기록물과 동일하다.

공공기관 처리과의 업무담당자는 조사·연구·검토서를 작성한 후, 전자기록 생산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록물분류기준표 또는 기록 관리기준표의 분류체계에 따라 해당하는 단위업무 또는 단위과제를 지정하 여야 한다.

만약 조사·연구·검토서의 등록이 누락된 경우, 매년 수행되는 기록물 정리기간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정리 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기록관으로 인계하여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일반문서와 달리 조사·연구·검토서를 별도의 간행물 형태로 생산한 경우 공공기관의 처리과는 간행물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간행물과 동일한 관리 절차를 밟는다. 이 경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한 등록은 생략할 수 있다.

비고 조사·연구·검토서를 간행물로 발간할 경우, 영구(중앙)기록물관리기관 과 당해 기관의 기록관 등 기록물관리부서에 각 3부씩 송부하여야 한 다.



그림-1 간행물 관리 절차도

공공기관의 회계 부서는 간행물 관련 지출 승인을 하는 경우 반드시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비고 간행물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방식 등, 간행물의 상세한 관리절차 및 내용은 "NAK/G 1-1:2011(v2.1)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제1부: 간행물"을 참조한다.

5.3.2 제목 부여

업무담당자는 조사·연구·검토서에 제목을 부여할 때, 해당 업무 혹은 관련 업무와 연관 지어 부여하도록 하며 조사·연구·검토서임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제목을 명기한다.

보기 나눔의 날 제정 타당성검토(서), 00택지조성원가 적정성 검토(서), 현장 원가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서), 00군 일자리 공급자 환경조사(서)

5.3.3 보존기간 책정 기준

조사·연구·검토서의 보존기간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일반문서가 포함되는 단위과제 또는 단위업무와 동일한 보존기간을 책정하도록 한다.

따라 베지되 표주인

다만, 해당 공공기관에서 판단하기에 보존가치가 높은 조사·연구·검토서의 경우, 해당 단위과제 또는 단위업무와 달리 영구 또는 준영구 등으로 기록물

보존기간 재책정 시 단위과제 또는 단위업무 신설을 통하여 별도 보존기간 을 책정할 수 있다.

조사·연구·검토서가 간행물의 형태로 생산되는 경우, 별도의 보존기간을 책정하지 않는다.

5.3.4 생산현황 통보

공공기관은 매년 기록물 정리기간에 전년도에 생산된 조사·연구·검토서의 생산현황을 처리과별로 정리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시 함께 기록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비고 생산현황보고 서식은 부속서 H-1를 참고한다.

5.4 관리 및 이관

조사·연구·검토서는 해당 단위과제 또는 단위업무에서 생산된 기록물과 통합 검색에 활용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조사·연구·검토서가 문서의 첨부물인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의 이관 시기에 기록관으로 이관하고, 간행물의 형태로 발간된 경우에는 발간된 후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자파일과 함께 영구(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의 기록관으로 송부하도록 한다.

비고 민간기관에서 생산하여 공공기관으로 접수·납본된 연구용역보고서(조사·연구·검토서)의 경우는 제출받은 후 15일 이내에 영구(중앙)기록 물관리기관과 기록관으로 송부하도록 한다. 발간등록번호 없이 납본된 경우에는 업무 담당부서에서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간행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해당 표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6 회의록 따라 폐지된 표준임

6.1 작성대상

공공기관은 아래에서 예시하는 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록을 생산하여야 한다.

-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 (3) 주요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 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 (4)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 보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00교육발전자문위원회, 000교육행정협의회 등
- (7)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 (8) 그 밖에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회의
- (1), (2), (3), (5)의 회의 중 부속서 K-1과 같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주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하나를 생산 하고 녹음기록을 생산하는 경우 녹취록을 함께 생산한다.
- 비고 1 (5)에 해당하는 회의체의 유형은 부속서 K-2를 참고하라.
- 비고 2 위의 (1)~(8) 외에 생산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생산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밟아 관리하도록 한다.

[[]라 메지되 표주인

6.2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의무 대상 지정 절차 및 관리

기록관은 관할 공공기관에 위원회 등 회의체가 신설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 생산의무가 부과되는 회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생산의무가 부과되는 회의인 경우에는 회의체를 주관하는 처리과에게 이를 통지하여 회의록을 생산·등록 관리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그림-2 회의록 생산의무 대상 지정 절차도

공공기관의 회의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는 매년 회의체의 신설ㆍ폐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회의록의 원활할 생산과 관리를 위해 그 현황을 당해 기관의 기록관에 통보하고 그 시기 및 방식은 각 기관별로 명확하게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6.3 회의록 구성요소

해당

공공기관은 회의록 생산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성요소를 포함한 회의록을 생산하여야 한다.

표-2 회의록 구성요소

구성요소	구성요소 설명	
회의명	회의의 정식 명칭을 기재	
회의 개최 부서(기관)	회의 주관부서(기관)	
일시 및 장소	회의가 개최된 일시와 장소를 기재	
참석자·배석자 명단	참석자·배석자의 성명과 직위를 기재	
회의 진행 순서	회의 개회부터 폐회까지 전체적인 진행상황 기재	조(에
상정안건	회의에 상정된 안건명을 순서대로 기재	711
발언요지	참석자들의 상정안건에 대한 발언한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및 표결이 있는 경우, 표결의 결과도 기재	

- 비고 1 상정된 안건은 회의록 등록 시 함께 등록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비고 2 회의록 작성 시 위원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 서명자료도 붙임으로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 비고 3 회의록을 작성할 경우, 표-2 '회의록 구성요소'와 함께 부속서 D 회의록 작성 예시를 참조한다.

6.4 등록 및 생산현황 통보

6.4.1 등록 방법

회의록 생산과 동시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이 간행물로 생산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간행물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회계 부서는 간행물 관련 지출을 승인하는 경우 반드시 간행물 발가등록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4.2 제목 부여

회의록의 제목은 약어 등을 사용하지 말고 정식명칭을 기입하여야 하며, 개최연도와 차수 등을 함께 기술하여 추후 검색하거나 활용하기 편리하게 하여야 하다.

보기 000설계심사위원회 제3차 회의 회의록, 0000년도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0000년 00군의회 회의록 제230회

따라 폐지된 표준임

회의록을 생산하여 등록(회의록 단독 등록 혹은 붙임자료로 첨부)하는 경우회의록임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문서제목에 명기하도록 한다.

보기 000정책위원회 제0차 회의 결과 보고 및 회의록, 00시 월례회의 회의결과(회의록)

6.4.3 보존기간 책정 기준

회의록의 보존기간은 해당 업무의 단위과제 또는 단위업무와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한다.

다만 특별히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회의록의 경우, 해당 단위과제 또는 단위업무와 달리 영구 또는 준영구 등으로 기록물 보존기간 재책정 시단위과제 또는 단위업무 신설을 통하여 별도 보존기간을 책정할 수 있다.

회의록이 간행물의 형태로 생산되는 경우, 별도의 보존기간을 책정하지 않는다.

6.4.4 생산현황 통보

회의체를 운영 혹은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처리과는 회의록의 생산현황이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매년 수행하여야 하는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시에 처리과는 기록관으로, 기록관은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전년도에 생산된 회의록 생산현황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회의록을 작성하는 업무담당자는 회의록을 등록하는 시점에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등록하고, 등록된 사항에 따라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 폐지된 표준임

- 비고 1 회의록을 생산·관리하는 공공기관은 비공개로 결정된 회의록이 비 공개로 결정된 시기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다.
- 비고 2 회의록과 함께 생산된 속기록·녹취록 혹은 녹음기록은 10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0년이 경과한 이후 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여부를 판단 한다.

회의록은 공공기관 의사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 기록으로 기록관 및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의 이관은 해당 단위과 제 또는 단위업무의 기록물철 이관 시에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

비고 1 회의록이 간행물(전자간행물 포함) 형태로 생산된 경우는, 발간된 후

15일 이내 전자파일과 함께 영구(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의 기록관으로 송부하도록 한다.

비고 2 기록관에서는 회의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속서 E를 참고하여 위원회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7 기록관에서의 생산의무 부과 기록물 관리

7.1 생산의무 부과 기록물 지정

7.1.1 대상 지정 계획 수립

기록관리자는 매년 기록관 업무 계획을 수립할 때, 당해 연도 처리과에서 의무적으로 생산하여야 하는 조사·연구·검토서 및 회의록에 대한 지정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록관은 관할 공공기관의 생산의무 부과 대상 기록물 여부를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록관은 처리과 의견 조회를 거쳐 매년 생산의무 부과 대상 업무를 지정하고, 해당 처리과 생산의무 부과 기록물이 이 표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비고 생산의무 부과대상 업무를 조사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는 부속서 G-1, G-2를 참조한다.

7.1.2 지침서 작성 및 배포

기록관리자는 처리과별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생산의무 대상 업무목록 과 기록화 대상 지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처리과에 배포하여 의견을 수렴한 다.

비고 생산의무 대상 업무 조사 양식은 부속서 C와 부속서 F를 참조하여 기 관별 성격과 특성에 맞도록 변경하여 활용한다.

표-3 지침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 목록

생산의무 대상	참고목록
	소관법령
고시 . 여그 . 커트셔	전년도 생산기록 및 업무계획서
조사・연구・검토서	해당년도 업무계획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된 단위과제 또는 단위업무
	소관법령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배포 주요회의 목록
	기관 내 등록된 회의체 목록
회의록	전년도 생산 기록 및 업무계획서
8	해당년도 업무계획서
	위원회 및 회의체 구성 현황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된 단위과제 또는 단위업무

애당 7.2 생산의무 부과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지록관리자는 해당 기관의 생산의무가 부과된 기록물 중 조사·연구·검토 서와 회의록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속서 A (참고) 조사·연구·검토서 구성요소(민간기관용)

구성요소	구성요소 설명
조사・연구・검토배경	조사·연구·검토가 필요한 배경이 명확히 드러나 도록 서술한다.
제안자 등 관련자의 소속기업 (기관)명, 담당자 성명	최초 제안자 및 해당과제를 수행하는 관련자의 소속기업, 담당자 성명 등을 표시한다.
관련현황과 검토 내용	조사사항과 관련한 현황, 통계 등이 있는 경우 포 함시킨다.
각종 대안과 조치 의견	조사·연구·검토서의 작성으로 도출된 대안 및 조치에 필요한 의견이 포함되도록 한다.
예상효과 혹은 결과분석	조사·연구·검토서의 업무 반영 이후 예상되는 효과 및 결과를 반영한다.

해당 표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폐지된 표준임

부속서 B (참고) 조사·연구·검토서 요약지 예시

	조사・연구・검	토서 제독	<u> </u>					
	주관기관명				담당자	전화		
	제안자 및 관련 속 및 성명	년자 소			연락처	팩스		
	조사・연구・검	토서 유형	3	일반문서()	, 간행물(), 기타()	
	조사・연구・검	토 기간	H 7		I준			
해당	조사 · 연구 · 목적 및 배경	검토		관리에 된 폐지된		量」 人で	방령 제75	조에
	관련 규정(지침)) 및 지시	사항 등	-				
	내용 요약							
	비고							

부속서 C (참고) 조사·연구·검토서 생산대상 업무 조사 양식(안)

연번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기간	관련근거	비고

• 부 서 명 : 사업 담당 부서명 기재

• 사 업 명 : 단위과제명 혹은 업무 계획서 상의 사업명 기재

• 사업기간 : 사업시행이 계획된 년, 월, 일로 기재

• 관련근거 : 사업과 관련된 법령, 조례, 기관장 지시사항 등

해당 표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폐지된 표준임

부속서 D (참고) 회의록 작성 예시

회의명	000위원회 제0차 회의 / 000위원회 전원회의
회의주관부서	회의주관부서(기관)
회의개최일시	00년00월00일 00:00~00:00
회의장소	
참석자명단	배석자가 있는 경우 배석자 명단 포함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위원 날인 /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위원 공람 또는 결재)
회의진행순서 1. 개회 2. 구미이레	폐지 표준

- 1. 개회
- 2. 국민의례
- 3. 회의안건 상정 및 토의
- 4. 폐회

상정안건

- 1.

따라 폐지된 표준임

- 2.
- 3.

발언내용(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인 경우 별첨 표시)

- 발언자성명(직위)
 - 발언내용
- 발언자성명(직위)
 -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결정사항
 - 안건 0에 대하여 000 결정함
- 표결내용
 - 안건 0에 대하여 000와 같이 표결함

비고 기타 회의 운영과 관련된 참고사항 기재

부속서 E (참고) 위원회 관리카드 예시

	주관기관명	대통령소속(주관:◇◇부)	위원회성격	자문				
	담당부서	000과(담당자)	연 락 처	Fax)				
	1. 위원장 : 국무총리(총리) 2. 위원 : 당연직 00명, 위촉직 △△명 3. 위원자격요건 ① 위촉직 : ◎◎계획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25인 내에서 대통령이 위촉 ② 당연직 : 00부, @@부, ◇◇부, □□부 등 8명 4. 위원임기 : 4년 5. 소속 : 분과위 1 -분과위구성 : 00정책위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5인 이상인 이하의 자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부장관이 된다.							
다	설치근거	**기본법 제26조	관한 법률	. 시행령 제75	조에			
	설치연월일 19**년 1월 1일(최초)							
설치목적 ◎◎의 계획 및 이용에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								
	주요업무	항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이관계획 수립 등	 2002년 이전 ◎◎정책위원회, ◎◎**종합계획심의회, ☆☆개발추진위원회 등의 활동 및 생산현황 파악 폐지된 위원회의 관련 회의록 등 이관조치 						
	비고							

OH

부속서 F (참고) 회의록 생산대상 업무 조사 양식(안)

연번	부서명	회의명	관련근거	녹음기록 속기록 생산 대상여부	담당자 (연락처)

• 부 서 명 : 회의체를 주관하는 처리과명

• 회 의 명 : 위원회, 확대간부회의 등 회의체 정식 명칭

• 관련근거 : 법령, 조례 등 회의체에 대한 관련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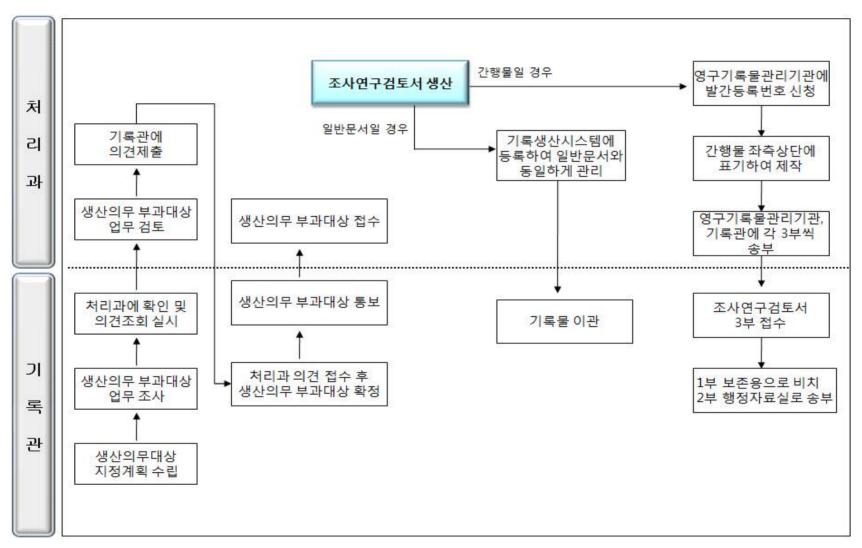
· 녹음기록 · 속기록 생산 대상여부 : 속기록이나 녹음기록 생산 대상 회의

여부 혹은 대상은 아니지만 실제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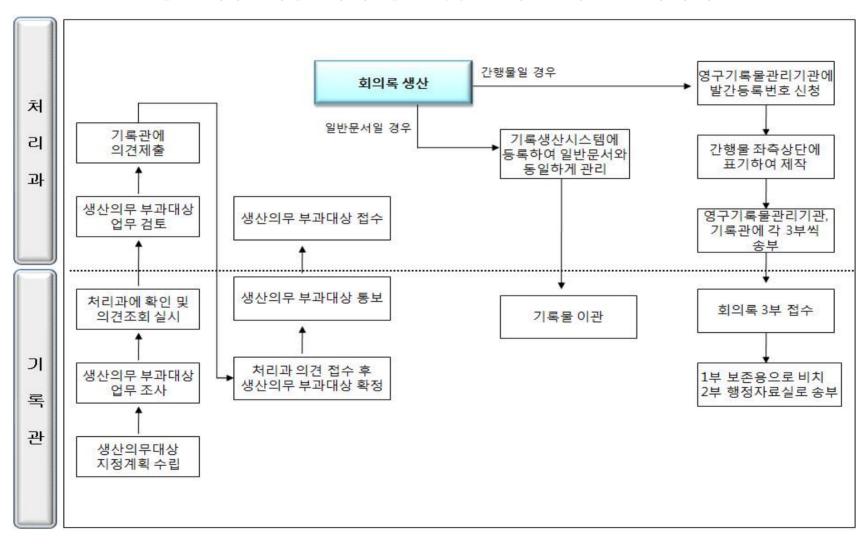
산되고 있는 경우

해당 표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폐지된 표준임

부속서 G-1 (참고) 생산의무 대상 기록 생산 및 관리 절차도 : 조사·연구·검토서



부속서 G-2 (참고) 생산의무 대상 기록 생산 및 관리 절차도 : 회의록



부속서 H-1 (규정) 생산현황 통보 서식 : 조사·연구·검토서

(기간: '00.1.1.~ '00.12.31.)

종류		형태		
さ 市	일반문서	간행물	기타	총계(건)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관련 사항				
2.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이에 상당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3.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4.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주요조약·협약·협정·의정서 등				
5. 「국가재정법」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공사	를」 시행	령 제752	EOI	
6.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총 계				

부속서 H-2 (규정) 생산현황 통보 서식 : 회의록

(기간: '00.1.1.~ '00.12.31.)

회의 종류		개최횟수		속기록/녹음
		서면결의	회의록 작성횟수	기록 작성횟수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4.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병령 제	75조애		
7.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 참석하는 회의				
8. 기타				
총계				

부속서 I (참고) 법령 조견표

표준조항 1	표준조항 2	법률 조항	시행령 조항
4 일반사항			제17조(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
4 보인/Y8			제18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5.1		제17조(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 제1항
	5.2		제17조(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 제2항
	5.3		제20조(기록물의 등록)
			제22조(기록물의 분류)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5 조사 · 연구 · 검토서			제26조(보존기간)
			제33조(처리과의 기록물생산현황통보)
			제55조(간행물의 관리)
	5.4	 제16ス(기로무 새사이 의치)	제20조(기록물의 등록) 제1항
		제16조(기록물 생산의 원칙) 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 제18조(기록물의 등록·분류·	제32조(기록물의 이관)
WELL TITO			제55조(간행물의 관리) 제1 · 2항
애당 표준은	6.1	· 편철 등)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제1항
	6.2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6.3	- 제22조(간행물의 관리)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제2항
	6.4		제20조(기록물의 등록)
			제22조(기록물의 분류)
6 회의록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제26조(보존기간)
			제33조(처리과의 기록물생산현황통보)
			제55조(간행물의 관리)
	6.5		제20조(기록물의 등록) 제1항
			제32조(기록물의 이관)
			제55조(간행물의 관리) 제1·2항
7 기록관에서의 생산의무 부과 기록물 관리	7.1		
, , , , , , , , , , , , , , , , , , , ,	7.2		

부속서 J (참고) 체크리스트

영 역	점검 항목	이행 여부	근거자료
일반사항	공공기관은 생산의무가 부과된 기록물에 대한 생산 및 관리에 대한 체계를 수립하였는가?		
크 선 시 · 영	공공기관의 기록관은 주요회의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당해 기관의 회의 총괄부서로부터 주요회의에 대한 정보를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공공기관은 주요정책 및 사업 수행 시 조사·연구·검토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조사・연구・검토서	공공기관은 조사·연구·검토서를 작성할 경우, 법령에서 제시하는 구성요 소를 만족하고 있는가?		
All I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조사·연구·검토서를 간행물로 생산한 경우 영 구기록물기관과 당해 기관의 기록관에 각 3부씩 송부하였는가?	4 TU75 X	CALL .
On a	공공기관의 기록관은 생산의무가 부과된 회의체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처리과에서 이를 생산·등록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있는가?	2 VII.177	2 OII
최 이 근	공공기관은 주요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회의록	공공기관은 회의록을 작성할 경우, 법령에서 제시하는 구성요소를 만족하고 있는가?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는 회의록을 간행물로 생산한 경우 영구기록물기관과 당해 기관의 기록관에 각 3부씩 송부하였는가?		
기록관에서의 생산의무	공공기관의 기록관은 연간 업무 계획을 수립할 때, 생산의무가 부과된 조 사·연구·검토서와 회의록에 대한 지정계획을 수립하였는가?		
부과 기록물 관리	공공기관의 기록관은 해당 기관의 생산의무가 부과된 기록물의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가?		

부속서 K-1 (규정) 관리대상 회의 예시 목록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지정 회의 목록

('14년 3월 현재)

				(14년 3월 원제)
7	'분	소관기관	대상회의	관련규정
	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기본법
	5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6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7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	8	-기획재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9		시도경제협의회	시도경제협의회규정
10	10	미래창조과학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1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 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
ðH.	12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생명공학육성법 기계 리 기기 등 지 기
	13		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법
	14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기본법
	15	교육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6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7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18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 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6·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 예회복에 관한 법률
	19	국방부	정책회의	국방부훈령 제1476호
	20		군무회의	국방부훈령 제1476호
	21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22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23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 회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
24 25 26	24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공무원연금법
	25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공무원연금법
	26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구분	소관기관	대상회의	관련규정
	27		기록물공개심의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8		기록물평가심의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9		기부심사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30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31		도서개발심의위원회	도서개발촉진법
	32		서해5도 지원위원회	서해5도지원특별법
	33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
	34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35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36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접경지역지원법
	37		정보공개위원회	정보공개법
	38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도로명주소법
	39		중앙민방위협의회	민방위기본법
	40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1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	지방자치법
大	42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지방자치법
U	43	표준은	5 · 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
	44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법
	4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 촌 지역개발위원회	농어업인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 진에 관한 특별법
	46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
	47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 인등 지원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8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 심의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49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축산법
	50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51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52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53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54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55		외국인투자위원회	외국인투자촉진법
	56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	구분	소관기관	대상회의	관련규정
	57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58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59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60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6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6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법
	63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한센인피해시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등에 관한 법률
	64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고용정책기본법
	65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발전기본법
	66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법
	67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법
	68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69	4 生业 6 干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70	해양수산부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71	에상기신구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72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위사업법
ŌΗ	73	해양경찰청	함정 항공기등 규격 및 장비선정 심의위	해양경찰청 해상치안장비 도입업무 규칙
	/4	국가인적자원위원 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기기 도	인적자원개발기본법
	75	경제사회발전노사 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본회 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76	경제사회발전노사 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무 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77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법
	78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79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진흥법
	80	국가생명윤리심의 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81	국가교육과학기술 자문회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82	도서관정보정책위 원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법
	83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84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부속서 K-2 (참고) 관리대상 회의 예시 목록 중앙부처 및 정부 위원회 예시 목록

('14년 3월 현재)

		(14년 3월 연재)
번호	회의명	설치(운영) 근거
1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2	감사위원회의	감사원법
3	감사활동조정협의회	공공감사 운영에 관한 법률
4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5	소위원회의	감사원법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7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8	경찰위원회	경찰법
9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법
10	고용보험위원회	고용보험법
11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공인노무사법
12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공인노무사법
13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14	노사관계발전위원회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15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임금채권보장법
18	임금체불정보심의위훤회	근로기준법
19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법
20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21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법
22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23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5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대상심의 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6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관세사법
27	관세사징계위원회	관세사법
28	관세심사위원회	관세법
29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관세법
30	원산지확인위원회	관세법시행령

번호	회의명	설치(운영) 근거
3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32	교원양성대학교 발전위원회	고등교육법 시행령
33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운영위원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34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35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36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교육기본법
37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교육공무원임용령
38	대학설립심사위원회	대학설립·운영규정
39	법학교육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40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41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립학교법
42	외국교육기관설립 · 운영심사위원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 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3	인정기관심의위원회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44	자격정책심의회	자격기본법
45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위원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46	중앙영재교육진홍위원회	영재교육진흥법
47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48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49	평생교육진흥위원회	평생교육법
50	학교도서관진홍위원회	학교도서관진흥법
51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2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학교체육진흥법
53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54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55	한국사능력검정시험자문위원회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	한국사정보화심의회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57	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기본법
58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9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상훈법 시행령
60	보훈심사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1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보훈기금법
62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63	주파수심의위원회	전파법
64	국민권익위원회 분과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번호	회의명	설치(운영) 근거
	65	국민권익위원회 소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66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67	보상심의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68	보훈의료전문위원회	행정심판법
	69	정보공개전문위원회	행정심판법
	70	행정심판위원회 본위원회	행정심판법
	71	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	행정심판법
	72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73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74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75	국방부특별배상심의회	국가배상법
	76	국방정보화자문협의체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77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78	군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79	군법무관시보실무고시위원회	군법무관임용법 시행령
	80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보안관찰법
	8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심의위원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82	군인복지위원회	군인복지기본법
0	83	군인연금급여심의회	군인연금법으인 법률」 시행령 제75소년
	84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	군인연금법 이
	85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	치료감호법
	86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7	유해발굴감식위원회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88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 에 관한 특별법
	89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기술관리법,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90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91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	6.25전쟁 중 적 후방지역 작전수행공로자에 대한 군복무 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92	국세심사위원회	국세기본법
	93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94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귀속재산처리법
	95	기준경비율심의회	소득세법시행령
	96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번호	회의명	설치(운영) 근거
	97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세무사법
	98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99	주류판정심의위원회	주세법
	100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1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건설기계관리법
	102	건축사징계위원회	건축사법
	103	골재수급심의위원회	골재채취법
	104	공간정보참조체계협의체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5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106	공역위원회	항공법
	107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08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09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10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기본법
	111	국가교통데이타베이스협의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112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113	국가지명위원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114	궤도건설심의위원회	궤도운송법
٨	115	도시개발위원회	기업도시개발특별법
U	116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117	수도권정비위원회 [[]-근	수도권정비계획법
	118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119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용산공원조성특별법
	120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자문위원회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121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원및조사 연구위원회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1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채권정리위 원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23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24	주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 -	주택법
	125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주택법
	12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기술관리법
	127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128	중앙건축위원회	건축법
	129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31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업단지인ㆍ허가 간소화 특례법

	번호	회의명	설치(운영) 근거
	132	중앙지적위원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133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34	중앙하천관리위원회	하천법
	135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136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137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주택법
	138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철도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139	항공안전협의회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140	해외건설진흥위원회	해외건설촉진법
	141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공인회계사법시행령
	142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공인회계사법
	143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공인회계사법
	144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145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46	보험조사협의회	보험업법
	147	시장효율화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8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49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기상관측표준화법
٨	150	기후자문협의회	기상법 기상
U	151	지진및지진해일관측기관협의회	지진재해대책법 = = -
	152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공공자금관리기금법
	153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국가계약법
	154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특례규정
	155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국세기본법
	156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7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58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59	배출권할당위원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160	복권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
	161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부담금관리기본법
	162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소득세법
	163	세무사징계위원회	세무사법
	164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국가재정법, 예산성과금 규정
	165	재정관리협의회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166	재정정책자문회의	국가재정법
	167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번호	회의명	설치(운영) 근거
	168	가축방역협의회	가축전염병예방법
Ī	169	간척지운영위원회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70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	171	농림종자위원회	식물신품종보호법
	172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Ī	173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4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농어업재해대책법
	175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농어업재해보험법
•	176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
•	177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농업협동조합법
	178	도시농업위원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79	동물복지위원회	동물보호법
	180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수의사법 시행령
	181	식품산업진홍심의회	식품산업진흥법
	182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여성농어업인육성법
	183	이력관리제운영협의회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84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185	중앙가축방역협의회	가축전염병예방법
0	186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187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188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축산법
	189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식물신품종보호법
<u>-</u>	190	해외농업개발심의회	해외농업개발협력법
	191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농약관리법
	192	비료공정규격심의회	비료관리법
	19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94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195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 위원회	문화재보호법
•	196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	문화재보호기금법
	197	문화재위원회	문화재보호법
-	198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 원 등에 관한 특별법
•	199	관광숙박대책위원회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200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국가재정법, 관광진홍개발기금법

	번호	회의명	설치(운영) 근거
	201	국어심의회	국어기본법
Ī	202	국제경기대회유치심사위원회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Ī	203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도서관법 시행령
	204	동계올림픽 특구위원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 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5	등록취소심의위원회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206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20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회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20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209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10	이스포츠진홍자문위원회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211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
	212	지역신문발전위원회전체회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213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법
	214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국어기본법시행령
	215	간접비산출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16	공익성심사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217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	218	국가정보화정책조정협의회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0	21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20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	기술사법
	221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과학기술기본법
	222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23	성과지표심의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224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5	외부평가위원회	한국연구재단법
	226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227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228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229	재난방송협의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30	정보통신진홍기금운용심의회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시행령
	231	정보화책임관협의회	국가정보화기본법
	232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과학기술기본법
	233	천체관측장비설치심의회	천문법시행령
	234	한국연구재단PM외부평가위원회	한국연구재단법
	235	핵융합에너지연구협의회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번호	회의명	설치(운영) 근거
	236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237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방송법
	238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239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방송법
	240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방송법
	241	방송통신위원회 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2	방송평가위원회	방송법
	243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방송법
	244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방송법
	245	위치정보심의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46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방송법
	247	감항인증심의위원회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
	248	가석방심사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49	공증인징계위원회	공증인법
	250	국적심의위원회	국적법시행령
	251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범죄피해자보호법
	252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253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범죄피해자보호법
٨	254	법교육위원회	법교육지원법
U	255	법무부본부배상심의회	국가배상법
	256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근]	변호사시험법
	257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보안관찰법
	258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59	사면심사위원회	사면법
	260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사법시험법
	261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외국법자문사법
	262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263	주택임대차위원회 -	주택임대차보호법
	264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치료감호법
	265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법제업무운영규정
	266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267	공익근무요원보상심의위원회	병역법시행령
	268	교육소집제외심사위원회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규정
	269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927호)
	270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훈령 제1062호)
	271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징병검사규정

	번호	회의명	설치(운영) 근거
	272	복무부적합자소집해제심사위원회	병역법 시행규칙
	273	생계곤란심의위원회	병역법 시행령
	274	소집해제심사위원회	병역법 시행규칙
	275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병역법
	276	감염병관리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77	건강보험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278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국민건강법
	279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280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건강검진기본법
	281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82	국가암관리위원회	암관리법
	283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치매관리법
	284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285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법
	286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법
	287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국민연금법
	288	모자보건심의회	모자보건법
	289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A	290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영유아보육법
U	291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그건 답을 기 시청등 제 / 기소 이
	292	연계급여심의위원회 [[-]-	공적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293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의료법
	294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95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96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297	장기요양심판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98	장기요양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99	장애판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300	제대혈위원회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301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02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
	303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04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05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306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보건법
	307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번호	회의명	설치(운영) 근거
	308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309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	영유아보육법
	310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311	편의증진심의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12	한방산업육성협의회	한의약육성법
	313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한의약육성법
	314	혈액관리위원회	혈액관리법
	315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16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317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산지관리법
	318	지속가능한목재이용위원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319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320	특별수종육성권역심의위원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21	가스사고조사위원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22	공론화위원회	방사성폐기물관리법
	323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324	광업조정위원회	광업법
	325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ň	32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U	327	부품소재발전위원회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328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29	산업표준심의회	산업표준화법
	330	석유개발사업융자심의분과위원회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331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332	에너지위원회	에너지법
	333	융자심의회(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334	이러닝진흥위원회	이러닝산업 발전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335	전기위원회	전기사업법
	336	전력정책심의회	전기사업법
	337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전시산업발전법
	338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_	339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 지역지원위원회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340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341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2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융자심의분과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번호	회의명	설치(운영) 근거
		위원회	
	343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해저광물자원개발법
	344	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5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346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정책심의 위원회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
	347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348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9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자연재해대책법
	350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351	중앙구조구급정책협의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352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소방시설공사업법
	353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354	중앙저수지 • 댐안전관리위원회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55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풍수해보험법
	356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57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위생법조
	358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大日	359	유전자재조합식품등안전성평가자료 심사위원회	식품위생법
U	360	의료기기위원회	의료기기법
	361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약사법
	362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사법
	363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축산물위생관리법
	364	감사청구심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365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366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367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공무원연금법
	368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공무원연금법
	369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370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371	기록관리표준전문위원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372	기록물공개심의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373	기록물평가심의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4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375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공무원임용령
	376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번호	회의명	설치(운영) 근거
		의위원회	
	377	소청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378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 공무원연금법
	379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380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381	이북5도위원회 회의	이북5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북5도위원회 규정
	382	재일교포북송저지특수임무수행자보 상심의위원회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38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384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385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도로명주소법
	386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국민제안규정
	387	중앙징계위원회	공무원징계령
	388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지방공기업법
	389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90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기본법
	391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
	392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지방재정법
	393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행정사법
ðН	394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지방자치법과 하는 번 를 지원 경 제 경 제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395	가족친화인증위원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6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397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 기념사업심의위원회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 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398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
	399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법
	400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원자력손해배상법
	401	원자력시설등의물리적방호협의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402	원자력안전위윈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03	조사위원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404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405	금융지원위원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406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ļ	407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408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409	청년위원회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10	국가통계위원회	통계법

	번호	회의명	설치(운영) 근거
-	411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12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법률
	413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변리사법
	414	변리사징계위원회	변리사법
	415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발명진홍법
	416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417	국제해양법위원회	국제해양법위원회 운영규칙
	418	방제비용체납정리위원회	방제비용부과징수규칙
	419	중앙해상수난구호 대책위원회	수난구호법
	420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 규정
	421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	선박관리산업발전법
	422	소금산업진흥심의회	소금산업진흥법
	423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	농수산생명자원위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4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425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426	수산종자위원회	식물신품종보호법
	427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신항만건설촉진법
0	428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농어업재해대책법 법률 시행력 제75조이
	429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430	어업재해보험심의회 "" "	농어업재해보험법
ļ	431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	해운법
	432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여성농어업인육성법
	433	원양산업발전심의회	원양산업발전법
	434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435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수산자원관리법
	436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수산업법
	437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연안관리법
	438	중앙항만정책심의회	항만법
	439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0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습지보전법
	441	국립공원위원회	자연공원법
	442	명세서공개심사위원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443	배출량인증위원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444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석면피해구제법
	445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번호	회의명	설치(운영) 근거
446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법
447	중앙환경정책위원회	환경정책기본법
448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법
449	지질공원위원회	자연공원법 시행령
450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1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	환경교육진홍법
452	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법
453	환경영향평가이의신청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폐지 표준

해당 표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폐지된 표준임

부속서 K-3 (참고) 관리대상 회의 예시 목록 지방자치단체 주요 위원회 예시 목록

('14년 3월 현재)

연번	회의명	설치(운영) 근거
1	(공동주책관리)분쟁조정위원회	주택법 제52조
2	(도립,군립)공원위원회	자연공원법 제9조
3	(시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62조
4	(시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	주택법 제85조
5	(자연)공원위원회	자연공원법 제9조
6	재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7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 조
8	감사청구심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
9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10	건축분쟁전문(조정)위원회	건축법 제4조 제2항
11	건축위원회	건축법 제4조
12	계약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2조
13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5항
14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9조
15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2항
16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7조
17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제13조
18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19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2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21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2	기부심사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23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2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25	대도시권행정협의회	지방자치법 제152조
26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27	도로명주소위원회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 2
28	도서관운영위원회	도서관법 제30조
29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30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연번	회의명	설치(운영) 근거
31	미술장식심의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32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33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4	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6조
35	부동산평가위원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36	북한이탈주민정착지역협의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2
37	분양가심사위원회	주택법 제32조의 4
38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39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40	산지관리위원회	산지관리법 제22조
41	생활보장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42	설계자문위원회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2
43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제23조
44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수도법 제30조
45	수산조정위원회	수산업법 제86조
46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제3항
47	안전관리위원회 (시도,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48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	지방재정법 제48조 시행령 제54조
49	의료급여심의회	의료급여법 제6조
50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의료법 제70조
51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지방자치법 제34조
52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제7조
53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법 제33조
54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5조
55	자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
56	자활기관협의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57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58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59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홍에 관한 법률 제7조
60	정보공개심의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61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보건법 제27조 제1항
62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정신보건법 제27조 제2항
63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64	지명위원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65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

	연번	회의명	설치(운영) 근거
	66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_	67	지방고용심의회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
	68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69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0조
	70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
	71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히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의 2
	72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
	73	지방세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법 제69조의 2
	74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 제2항
	75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제13조
	76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3조
	77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 제33조 제5항
	78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79	지방지적위원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8조
	80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기본법 제11조
	81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82	지방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
	83	지방하천관리위원회	하천법 제87조 제2항
ħ.	84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교통안전법 제13조
V	85	지역노사정협의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
	86	지역물류정책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87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88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89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연안관리법 제31조
	90	지역응급의료심의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3
	91	지역혁신협의회 (지역발전협의회, 시도 발전협의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92	치안행정협의회	경찰법 제16조
	93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법 제5조
-	94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법 제12조
	95	학교급식위원회	학교급식법 제5조
	96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학교급식법 제5조 제3항
	97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98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5조
	99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100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부속서 K-4 (참고) 관리대상 회의 예시 목록 교육청 주요 위원회 예시 목록

('14년 3월 현재)

연번	회의명	설치(운영) 근거
1	개교심의위원회	-
2	계약심의위원회	-
3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
4	고등학교입학추첨위원회	-
5	공유재산심의회	-
6	공적심의위원회	-
7	공직자윤리위원회	-
8	과학교육심의회	-
9	교육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
10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
11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12	교육규제완화위원회	
13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
14	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
15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관한 법률 : 시행령 제75조0
16	교직복무심의위원회	
17	기록물평가심의회 보고 비스 근	표준임
18	소청심사위원회	-
19	영재교육진흥위원회	-
20	유아교육위원회	-
21	인사위원회	-
22	정보공개심의회	-
23	제안심사위원회	-
24	체육특기자심사위원회	-
25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26	학교급식위원회	-
27	학교보건위원회	-
28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
29	행정심판위원회	-

참고문헌

[1] 박지태. 2008년 8월. 「기록관리법령 따라읽기」. 선인출판사.

폐지 표준

해당 표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폐지된 표준임